

제 1487 호
1980. 5. 1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고 건
 편집인: 공보관 유 천 수
 전 화: 731-6111-3
 인 쇄: 서울특별시 종합편집실
 전 화: 735-3337

시 보

차 례

- ◎ 공문사항
 - '90건설이용기술개발경진대회개회계획 3
- ◎ 훈 령
 - 제 700 호 서울특별시청원경찰징계규정중개정규정 6
 - 제 701 호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료등과장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 6
- ◎ 공 고
 - 제 241 호 판인신조교부공고 8
 - 제 242 호 판인신조교부공고 8

(이면계속)

공																				
발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389

제 243 호	제2종전기공사업면허행정처분공고	8
제 246 호	관인신조교부공고	9
● 구 고 시		
제 10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양천구)	9
제 1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성북구)	9
제 12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서대문구)	10
제 15 호	주택재개발육수제7구역제1지구사업시행변경인가 (성동구)	10
● 구 공 고		
제 38 호	단군성전위탁관리허가공고 (종로구)	10
제 43 호	도시계획안공고 (관악구)	11
● 사업소공고		
제 1 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및폐기	11
● 사업소고시		
제 14 호	하천점용허가	11
● 사 령		

공 문 시 행

'90전산이용기술개발 경진대회 개최계획

1. 목 적

- 행정업무의 전산화 촉진
- 우수한 전산이용기술의 보급 및 확산
- 전산요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양양

2. 주 관

서울특별시

3. 세부실시계획

가. 실시일정

- 작품접수: '90. 4.23-7.28
- 심 사 : '90. 7.30-8.11
- 시 상 : '90. 8.25

나. 참가자격

시공무원 및 공사직원

다. 출품형태

개인 또는 공동출품 (3인이내)

라. 출품대상 작품

- 범용컴퓨터용 소프트웨어
- 퍼스널컴퓨터용 소프트웨어
- 기계발작품 및 기수상작품은 제외

마. 출품내용

- 문서(DOCUMENT)
- 업무의 정의(JOB DEFINITION)
-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 시스템 분석(SYSTEM ANALYSIS)
- 시스템 설계(SYSTEM DESIGN)
- 시스템 구현(SYSTEM IMPLEMENTATION)
- 시스템 운영(SYSTEM MAINTENANCE)

• (별표1) 문서목차 참조

- 소프트웨어가 수록되어 있는 보조기억 장치는 심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바. 중앙경진대회 출품

- 일 시 : '90.9.15
- 점 수 : 총무처 정부전자계산소
- 출품대상 : 시경진대회 입선작품중 2 작품 이내

- 시상및전시 : '90.11

사. 작품접수처: 서울시 기획관리실 전산 담당관

4. 대회운영

가. 심사기준: 중앙경진대회 작품심사표에 의함

나.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5인이내 내.외 전문가로 구성
- 심사: 출품내용에 대한 서류심사 및 실제운영시험(TESTING)

다. 시 상

○ PC분야									
등급	시 상 내 역			작 품 수	비 고				
금	시장표창 및 부상	500,000원		1					
은	시장표창 및 부상	300,000원		1					
동	시장표창 및 부상	200,000원		1					
○ 범용컴퓨터분야									
등급	시 상 내 역			작 품 수	비 고				
금	시장표창 및 부상	500,000원		1					
은	시장표창 및 부상	300,000원		1					
동	시장표창 및 부상	200,000원		1					
<p>5. 경쟁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에게 널리 홍보 하여 '90전산이용기술 경진대회에 적극 참여토록 조치바람 ○ 출품대상 작품은 '90. 7. 28일한 기일지 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품목록 1부 (별지2호 서식) - 작품의 개요설명서 1부 : 문서의 앞부분에 첨부 - 문서(DOCUMENT) : 각 작품별 1부 (별지1참조) · 소프트웨어가 수록되어 있는 보조기의 장치는 심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p>(별표1)</p> <p style="text-align: center;">목 서 록 차</p> <p>1. 업무의 정의 (JOB DEFINITIO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업무의 개요 1.2 업무전산화의 배경 1.3 업무전산화의 목표 1.4 업무전산화의 범위 1.5 업무전산화의 특성 <p>2. 타당성 조사 (FEASIBILITY STUDY)</p>					<p>2.1 시스템 개발목표 및 범위</p> <p>2.2 시스템 개발 계획서</p> <p>2.3 시스템 활용범위</p> <p>2.4 시스템 개발효과</p> <p>3. 시스템 분석 (SYSTEM ANALYSI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1 사용자 요구사항 3.2 D.F.D(DATA FLOW DIAGRAM) 3.3 D.D(DATA DIRECTION) <p>4. 시스템 설계 (SYSTEM DESIG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1 시스템 흐름도 4.2 파일 설계서 4.3 입출력 설계서 4.4 STRUCTURE CHART 4.5 MODULE SPEC <p>5. 시스템 구현(SYSTEM IMPLEMENTATIO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1 H/W, S/W 사양서 5.2 FILE 일람표 5.3 PROGRAM 일람표 5.4 CODE LIST 5.5 PROGRAM LIST <p>6. 시스템 운영(SYSTEM MAINTENANC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1 시스템 운영 지침서(USERS MANUAL) 6.2 운영작업 견본(SAMPLE RUN) <p>7. 기 타</p>				

(별표2)										
전산이용기술개발경진대회작품심사표										
심사위원 ㉓										
작품번호	작품명			기종						
평가부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결과						
				특점	수(0)	우(8)	미(6)	양(4)	가(2)	
소프트웨어 (SOFT-WARE) 개발기술 30	과제의사양기술	·명세화 기법 및 난이도 ·문서화	10							
	구조적분석및설계	·분석기법 ·설계의 기법 ·문서화	10							
	시스템구현	·구조적 프로그래밍(Programming) ·tool 사용여부 ·결과분석 및 성능평가 ·문서화	10							
행정전산화 목적달성도 70	전산화효과	·필요성 및 창의성 ·개발효과 및 경제성 ·이용도	30							
	사용자친숙도	·사용자의 용이도 ·사용자 교육 필요도 ·화면구성의 편의성 ·출력의 명확도 ·사용자 지침서 작성여부	30							
	적용성및유용성	·보수유지 용이도 ·모듈(module)의 범용성	10							
합			100							
종합의견										

제 1487 호 시

보 1990. 5. 1

18-5

훈 령

◎서울특별시훈령제700호

서울특별시청원경찰집계규정증개정규칙

서울특별시청원경찰집계규정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위원장은 내무국장,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인사과장, 도로시설과장, 녹지과장, 비상계획과장,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장이 된다.

제12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위원장은 재무국장, 부위원장은 국민운동지원과장, 위원은 법무담당관, 세정과장, 시민생활과장, 민방위과장이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훈령제701호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료등과징사무처리규정증개정규정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료등과징사무처리규정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 제1항중 “수도관리과장”을 “하수과장”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통합공과금 검침부) ①통합공과금 검침부 (이하 “검침부”라 한다)는 하수도 변호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하수도사용이 폐지된 검침부는 동별 하수번호순으로 칠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중 “검침원”을 “통합공과금 검침원 (이하 “검침원”이라 한다)”로 하고 “검침카드”를 “검침부”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검침카드”를 “검침부”로 한다.

제11조 제2항중 “휴대용양수기”다음에 “순간유량계, 초음파유량계”를 삽입한다.

제12조 제2항중 “전자계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서울특별시 지정 전산기관 (이하 “전산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조정 및 전산처리) ①하수도사용량은 검침부에 기재하여 조정한다.

②검침원은 하수도사용량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동장(공과금 주입)에게 제출한다.

③동장(공과금 주입)은 하수도사용자가 신규로 발생 또는 기존 하수도사용자의 변경 사항등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변경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동장(공과금 주입)은 제2항의 하수도사용량 점검 결과를 확인하여 전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점검을 한다.



이 경우 재점검결과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정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변경 처리 및 제4항에 의한 정정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전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점검 및 정정결과를 통보받은 전산기관에서는 통합공과금 고지서(이하 “고지서”라 한다) 및 하수도사용료와 관련한 자료를 남기 개시 10일전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⑦구정장은 제6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고지서 및 관련 자료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조정 종합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14조를 삭제한다.</p> <p>제16조 제1항중 “수도관리과장”을 “하수과장”으로 한다.</p> <p>제17조를 삭제한다.</p> <p>제24조를 삭제한다.</p> <p>제27조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p> <p>제28조 제3항중 “하수도 번호대장, 점검카드, 체납관리카드”를 “검침부, 하수도번호대장, 체납관리카드”로 한다.</p> <p>제32조 제1항중 “토목대장”을 “하수과장”으로 하고, “검용료 산정구분등 검용허가내용을 즉시 수도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검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수도관리과장”을 “하수과장”으로 한다.</p> <p>제33조 제1항중 “토목과장”을 “하수과장”으로 하고, “원인자 부담금 징수액을 결정하고, 즉시 수도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원인자 부담금유 징수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수도관리과장은 제1항에 의한 통보를 접수한 즉시”를 “하수과장은 제1항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을”으로 한다.</p> <p>제3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하수과장은 일시 사용 허가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조례 제18조 3항에 의거 일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p> <p>제37조 제1호 나목 및 동조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나. 통지서 발부후 20일 이내에 교체 설치되지 않을시에는 하수과장은 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하수량 계측기가 방류구에</p>	<p>설치된 경우에는 환경과에 통보한다.</p> <p>2. 시장이 설치한 계측기</p> <p>가. 구정장은 계측기의 설치, 교체, 철거 사유가 발생시 즉시 시간계 설치, 교체 요구전표(제35호 서식 갑·을·병)를 작성하여 시간계 설치 교체요구대장에 기록나. (갑)지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하수번호순으로 보관</p> <p>다. 구정장은 가항에 의거 5일 이내에 시간계를 교체완료하고 (을)지, (병)지에 설치, 교체, 철거시의 지침과 작업 완료일자를 기록</p> <p>라. (병)지에 의거 대장을 정리한 후 (갑)지와 (병)지를 일자순으로 철하여 보관</p> <p>마. 구정장은 교체한 시간계의 지침, 봉인상태등을 확인한 후 입고</p> <p>바. 교체한 시간계가 봉인등 관리상태에 이상이 발견되면 담당직원을 근무보고서를 작성,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8조 제1항중 “철거 계측기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시에는 사용자가 입회할 수 있다”를 “철거한 계측기를 공인 점검기관에 점검 의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적린 점검 결과”를 “점검결과”로 한다.</p> <p>제4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제1항 1호 및 2호는 내익월말까지 제3호 및 제4호는 내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행한 하수도사용료과장사무처리규정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p>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공 고</div> <p>◎서울특별시공고제241호</p> <p style="text-align: center;">관 인 신 조 교 부 공 고</p> <p>“서울특별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관 인을 관인 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5조와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신조교부함을 동규정 제9조 및 동규칙 제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4. 25 서울특별시장</p> <p>1. 사용개시일자: 1990년 5월 1일 2. 관인 신조</p>		<p>구청장”의 중재민원사무용 관인을 관인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5조와 서울특별시 관인 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교부함을 동 규정 제9조 및 동 규칙 제 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4. 25 서울특별시장</p> <p>1. 사용개시일자: 1990년 5월 1일 2. 관인신조</p>			
인 영	 				
인 영					
공인명	<p>관악구청장인(신 림제7동 중재민원 사무용)</p> <p>동대문구청장인 (장안제2동 중계 민원 사무용)</p>				
공인명	<p>서울특별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인</p> <p>◎서울특별시공고제242호</p> <p style="text-align: center;">관 인 신 조 교 부 공 고</p> <p>서울특별시 산하 “관악구청장” 및 “동대문</p>				
<p>아 래</p>					
면허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사 유	처 분 내 용
제166호	명진산전(주)	이정대	강남구 역삼동 792-5	전기공사업법 제29 조 제2항 제3호	과태료 및 경고
제293호	한일방식건설	이승걸	" 642-9	"	"
제1141호	국광전업사	권국광	논현동 10-10	"	영업정지 2월 (’90. 4.24 - ’90. 6.23)
제538호	텍토닉기전	김영찬	역삼동 682-7	"	시정지시 및 경고

<p>◎서울특별시공고제246호</p> <p style="text-align: center;">관 인 신 조 부 공 고</p> <p>서울특별시 산하 "은평구청장"의 중계민원 사무용 관인을 관인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5조와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교부함을 동 규정 제9조 및 동 규칙 제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4. 27 서울특별시 장</p> <p>1. 사용개시일자: 1990년 5월 1일 2. 관인신조</p>	<p>주택조합의 2개 직장주택 조합</p> <p>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규모 ○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191-18의 2필지 ○면적: 4,797㎡ ○규모: 아파트 15층 1동 128세대</p> <p>4. 사업시행기간: 1990. 4 ~ 1991. 5</p> <p>◎성북구고시제11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p> <p>1. 서울특별시고시제673호 (78.12.21)로 도시계획사업(도로)결정 및 지적승인된 삼양로-도봉로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성북구공고제31호 (90.4.13)로 공람공고하고 도시계획법 제25조, 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2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인가하고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4. 28 성북구청장 인</p> <p>1) 사업시행지: 길음동 1262의 263-길음동 481의1간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삼양로-도봉로간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규모: 폭=12m, 연장=550m 4) 사업시행자: 성북구청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90. 4-'9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 건물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7)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관계인주소, 성명: 별첨 8)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성북구청(토목과, 건설관리과)비치</p>
 	
<p>관인명</p> <p>(전관내동 중계 민원 사무용)</p> <p>(전관외동 중계 민원 사무용)</p>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구 고 시</p>	
<p>◎양천구고시제10호</p> <p style="text-align: center;">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p> <p>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4. 25 양 천 구 청 장</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1. 사업 명: 민영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2. 사업주체: 국제공항 공항관리공단 직장</p>	

<p>●서대문구고시제12호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5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4. 30 서 대 문 구 청 장</p> <p>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농협총제직장주택조합 조합장 안영학 서대문구청 직장주택조합 조합장 김윤찬 공익건설(주) 대표이사 장춘식 현재건설(주) 대표이사 최낙곤 3. 사업시행위치 : 서대문구 홍제동 272-72 호의 7필지 4. 대지면적 : 9,160.0㎡ 5. 사업규모 : 아파트 15층 2동 228세대및</p>		<p>부대복리시설 6. 사업시행기간 : 1990. 6 - 1992. 12</p> <p>●성동구고시제15호 주택개발재개발 옥수제7구역제1지구 사업시행변경인가</p> <p>1. 서울특별시고시제262호('87. 4. 17)로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되고 같은고시 제678호('88. 8. 12)및 성동구고시 제34호('89. 12. 30)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주택개발재개발 옥수제7구역제1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변경인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1990. 4. 26 성 동 구 청 장</p> <p>가. 사업시행변경인가 내용 1) 사업시행구역 : 성동구 옥수동 2번지 일대(종전과 같음) 2) 사업시행변경인가내용</p>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건축면적	6,544.26			6,572.41		가버너실, M.D.F실 사당의 신설 및 면적 증가
건축연면적	64,646.99			64,675.14		
건폐율	22.69%			22.79%		
용적율	207.18%			207.27%		
기타	별첨 변경인가조서 및 도면과 같음 (도면생략)					
<p>3) 사업시행기간 : '90. 12. 31 (종전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구 공 고</p> <p>●종로구공고제38호 단군성전 위탁관리 허가공고</p> <p style="text-align: right;">1990. 4. 25 종 로 구 청 장</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50 단군성전 위탁관리 계속 허가건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6조2항에 의거 허가하고 같은법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p>				
공원명	위 치	용 도	허 가 내 역		허 가 기 간	수 허 가 자
사 직 공 원	종로구 사직동 1-50	단 군 성 전	800.7㎡	단군성전 52.92㎡ 관 리 실 107.64㎡ 경 문 18.63㎡	'90. 5. 1- 95. 4. 30	종로구 사직동 1-50 사단법인 현 정 회

●관악구공고제43호
도시계획안공고
 1.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분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1990. 4. 30 - 1990. 5. 14 (14일간)
 나. 공람장소 : 관악구청 도시정비과 (전화 880-3385)
 1990. 4. 30
 관 악 구 청 장
 ○ 도시계획안

구분	등급	구별	번호	폭(m)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3		6	100	신림동 808-572	신림동 699-3	하천부저내 폭6m 도로신설
기정	소로	3		6-8.5	17	봉천동1650-13	봉천동1650-13	폭원축소
변경	소로	3		6	17	"	"	"
신설	소로	3		6	80	신림동 산 197-23	신림동 597-59	공원용지내 연결 도로신설

* 관련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된 노선과 같음.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직인 규칙 제 7조 및 제9조에 의거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칙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0. 4.

사 업 소 공 고

●서울특별시전자계산소공고제1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및폐기
 서울특별시 전자계산소장
 1. 사용 및 폐기 일자 : 1990. 4.
 2. 등록 및 폐기

인	신					규					폐 기														
	영					영					영														
공인명	전자계산소전산운영과분임 물품출납원인					전자계산소전산처리과분임 물품출납원인					전자계산소전산개발과분임 물품출납원인					전자계산소전산관리과분임 물품출납원인					서울특별시전자계산소분임 물품출납원인				

사 업 소 고 시

●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14호
하천점용허가(선박운항허가)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한강구역내 유선영업에 대하여 하천법 제 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선박운항)을 허가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0. 5.

허가 년월일	운항허가 척 수	운 항 구 간	허가기간	운 항 목 적	허 가 를 받 은 자		
					주 소	성 명	직 명
1990. 5	모터보트(수 스카) (4척)	한강(율림역 대교-천호대교)	1990. 5. 1- 12. 31	유선업 경영을 위한 선박운항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90번지	송파구 풍납동 190번지	송파구 풍납동 190번지

사 령

◎1990년 4월 26일자 7급 공무원 면직 명 제141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유 병 덕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보험연금과	지방행정주사보

◎1990년 4월 25일자 5급 기술직 공무원 파견 명 142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유 훈	지하철 건설본부 파견 ('90. 4. 25 - '90. 12. 31)	내 무 국	건축기과

5급 공무원 전보 명 제142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병 패	통계담당관 통계조사계장	양 천 구	지방행정사무관
이 원 대	연료과 석탄계장	관 약 구	"
차 일 환	한강공원관리사업소	동 작 구	"
윤 한 홍	중 구	내 무 국	행정사무관
한 수 동	용 산 구	"	"
김 인 철	동 대 문 구	"	"
유 재 통	은 평 구	"	"
박 주 환	양 천 구	"	"
조 인 동	동 작 구	"	"
김 경 한	영 등 포 구	"	"
이 비 오	동 작 구	"	"
이 정 호	관 약 구	"	"
하 정 원	서 초 구	"	"
이 규 일	교 통 방 송 본 부	"	지방행정사무관
김 문 상	한강공원관리사업소	동 대 문 구	"

인 사 발 령 통 지 명 145호

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이 정 호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내무국 근무를 명함 90. 4. 24

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내무국 근무를 명함	이 비 오	90. 4. 24
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내무국 근무를 명함	조 인 동	90. 4. 24
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내무국 근무를 명함	박 주 환	90. 4. 24
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내무국 근무를 명함	김 인 철	90. 4. 24
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내무국 근무를 명함	유 재 봉	90. 4. 24
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내무국 근무를 명함	한 수 동	90. 4. 24
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내무국 근무를 명함	김 경 환	90. 4. 24

<p>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내무국 근무를 명함</p>				윤	한	홍
				90.	4.	24
<p>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내무국 근무를 명함</p>				하	정	원
				90.	4.	24
<p>총 무 처 건축기좌시보 건축기좌에 임함 서울특별시 내무국 근무를 명함</p>				류	훈	
				90.	4.	24
<p>◎1990년 5월 1일자</p>			<p>9급기술직 공무원 파견</p>		<p>령 제146호</p>	
성 명	발령사항		현 부서	직 급		
이철환	대통령 경호실 파견 ('90. 5. 1-'91. 4. 30)		중앙구	지방보건기원보		
<p>◎1990년 4월 27일자</p>			<p>9급공무원 전보</p>		<p>령 제147호</p>	
성 명	발령사항		현 부서	직 급		
차혜자	구로구		중앙구	지방행정서기보		
<p>7급 행정직 공무원 특별임용</p>			<p>령 제148호</p>			
성 명	발령사항		현 부서	직 급		
김국형	지방행정주사보 시보에 임함 자동차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신 규			
<p>6급 공무원 징계</p>			<p>령 제149호</p>			
성 명	발령사항		현 부서	직 급		
한기경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1, 2호에 의거 "감봉 3월" 처함		시립대학교	지방행정주사		

◎1990년 4월 26일자		인사 발령 통지		령 제150호		
서울특별시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행정사무관 김 에 랑 서기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가정복지국 청소년과장에 보함						
90. 4. 27						
서울특별시 민방위국 비상계획과 계획담당(5급상당)에 임함						
임 신 철 90. 4. 26 대 통 령						
◎1990년 5월 1일자		5급 공무원 전보		령 제151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성 수	통계담당관 통계기준 제장	성 북 구	지방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 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상수도사업본부사령 </div>						
◎1990년 4월 19일자		6급이하 지방기업행정직 면직		령 제47호		
인 비 번호	성 명	계 정	현 직			
		부 서 직 위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1	김 금 석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부수도 사 업 소	지방기업 행정서기보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공무 국외 여행 명령 통보						
여 행 자			여 행 국	여 행 기간	여 행 경비	여 행 목 적
소 속	직 명	성 명				
은평구	이 사 관	김치운	켄터버리시	'90. 5. 1-5. 8 (8일간)	구 비 (7,950불)	자매도시(호주국 켄터버리시) 초청방문
" 청소과	지방행정사무관	이재돈	"	"	"	"
"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제성출	"	"	"	"

공무국외여행명령통보

여 행 자			여 행 목 적	여 행 국	여 행 기간	경 비
소 속	직 명	성 명				
내무국 (총무과)	서 기 관	정이간	서울시 축구단 세계대만 쟁 축구대회 참가자 인솔	대 만	'90.5.9-5.13 (5일간)	초청자부담
"	지방행정 주 사	이수철	"	"	'90.5.9-5.21 (13일간)	"
청소1과	서 기 관	김재중	'90 서울-동경간 교류사업 의 일환으로 청소, 환경행정 에 대한 조사 연구	동 경	'90.5.8-5.13 (6일간)	시 비 (5,998불)
"	지방행정 주 사	선규경	"	"	"	"
환경과	지방보건 기 과	유태봉	"	"	"	"
"	지방화공 기 사 보	단봉문	"	"	"	"
"	지방환경 기 사 보	강중재	"	"	"	"
투자관리 담당관	지방이사관	김주일	제2기 지하철 건설 의자 소요분 확보 및 건설기업 조 사	동경, 오사까, 후쿠오까, 홍콩	'90. 5. 6- -5. 16 (11일간)	시 비 (9,999불)
지하철 건설본부	지방공업 기 정	이상훈	"	"	"	"
"	지방시설 기 정	최창식	"	"	"	"
"	지방토목 기 사 보	최항길	"	"	"	"
서울특별시장						

[별지 제2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성 명	박 성 균 (朴 聖 均)	소 속 은평구 총무과(대기)			
			직 명 지방행정서기			
사 본 적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407					
항 주 소	서울 노원구 상계동 1096-10 상계부곡아파트 3동 104호					
출 석 이 유	심의 및 진술					
출 석 일 시	1990년 5월 16일 14시 00분					
출 석 장 소	기획상황실					
유 의 사 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p>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년 5월 1일</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 위원장</p> <p style="text-align: right;">귀하</p>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직 명	
	본 적					
항 주 소						
<p>199 년 월 일 시에 개최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성 명</p> <p>서울특별시제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p>						



인적사항		이 상	소 속	직 명
		이 상 열 (李相烈)	중구 총무과	지방건축기사
본 적		서울 중구 삼림동 4번지		
주 소		서울 중구 신당동 333-347		
출석이유		정계심의 및 진술		
출석일시		1990년 5월 16일 14시 00분		
출석장소		시정 기획상황실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p>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p> <p>1990년 5월 1일</p> <p>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 위원장</p> <p>귀하</p>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명
		본 적		
		주 소		
<p>199 년 월 일 시에 개최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p> <p>199 년 월 일</p> <p>성 명</p> <p>서울특별시제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p>				

